


본 정보지는 육계자조금으로 제작되어
전국의 모든 육계농가들에게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육계자조금

2010. 12

자조금소식 2010 전국 육계인 순회교육 전남, 경기, 경남에서 실시

외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재발 방지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실적 2010년 육계자조금 납부실적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Korea Poultry Board

하림은 더 이상 국가 정책사업인 육계자조금사업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육계자조금사업은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육계농가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한 제도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계육협회를 전면에 내세운 하림이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육계자조금사업을 방해하고 있어 육계인들의 시름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하림과 한국계육협회는 육계농가와의 상생을 말로만 외칠 뿐 오히려 농가들을 소작농으로 치부해 버리는 한편 불공정한 계약서를 앞세워 자신들의 배 불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농가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치 않은 행동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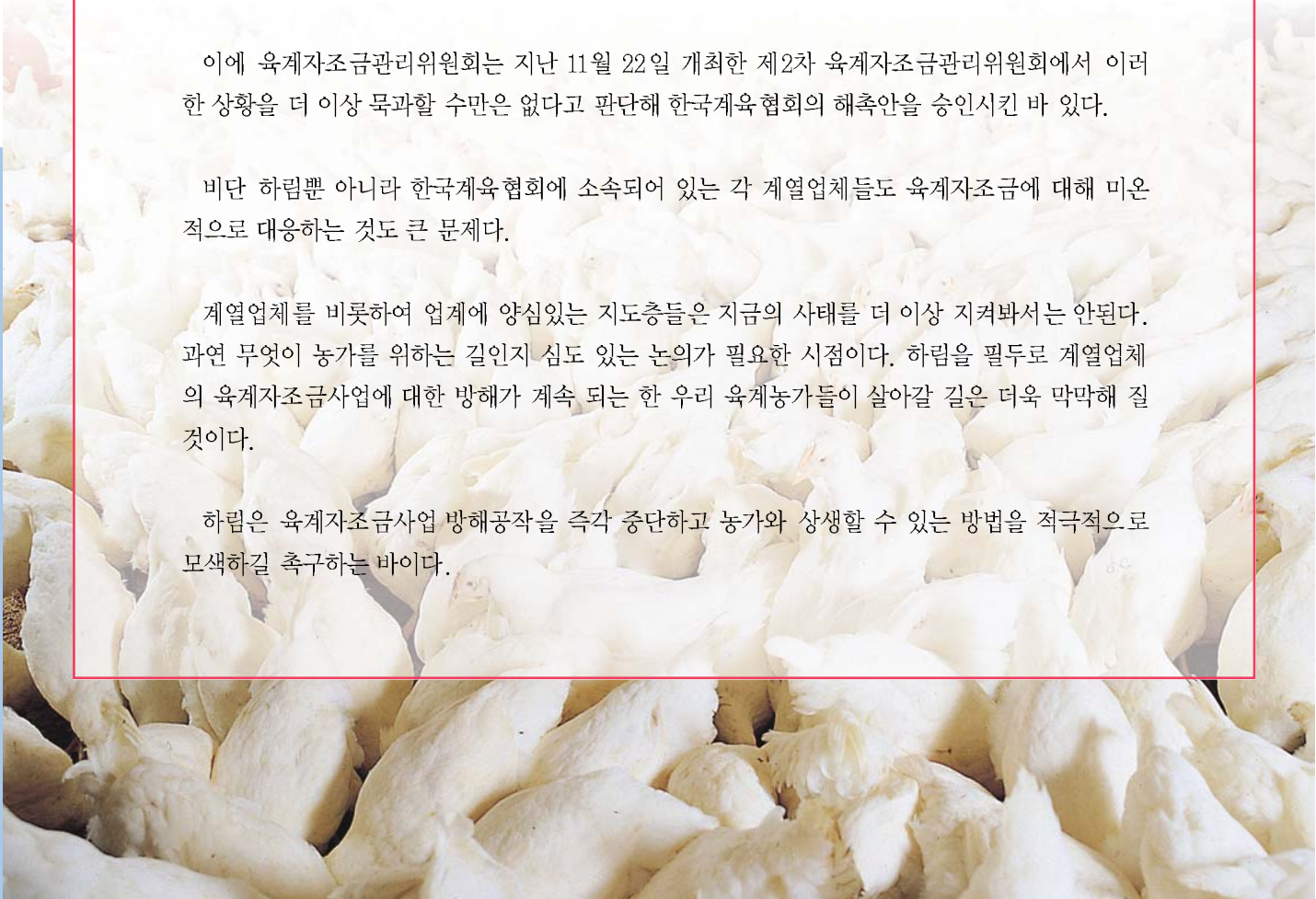
더욱이 최근 들어 우리나라 육계산업이 안정화에 접어들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내세워 육계자조금 자체를 부정하는 일련의 행동 등이 과연 육계농가들과의 상생을 외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란 말인가?

이에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개최한 제2차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해 한국계육협회의 해촉안을 승인시킨 바 있다.

비단 하림뿐 아니라 한국계육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각 계열업체들도 육계자조금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큰 문제다.

계열업체를 비롯하여 업계에 양심있는 지도층들은 지금의 사태를 더 이상 지켜봐서는 안된다. 과연 무엇이 농가를 위하는 길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림을 필두로 계열업체의 육계자조금사업에 대한 방해가 계속 되는 한 우리 육계농가들이 살아갈 길은 더욱 막막해 질 것이다.

하림은 육계자조금사업 방해공작을 즉각 중단하고 농가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농가의 사육제경비 현실화를 통해 생산에만 전념토록 해야

대한양계협회, 국회토론회에서 계열주체에 강력히 촉구

대한양계협회는 계열주체의 불공정한 위탁사육계약서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며 먼저 사육제경비의 현실화를 통해 농가들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지난 12월 15일 어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하림과의 '끝장 토론'에서 현재 농가와 계열주체가 맺고 있는 위탁사육방식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농가의 사육제경비를 현실화 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농가의 생산성이 향상된 부분에서는 농가와 계열주체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끝장토론회'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슈로 부각된 육계사육농가와 계열주체간의 위탁사육계약서 불공정 여부에 대한 시비를 가리고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안성) 주최로 '육계계열화사업, 그 해답을 모색하다'란 주제로 열렸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축산경제연구원 노경상 원장이 좌장을 맡고 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과 이홍재 부회장, 하림 김홍국 회장과 정분성 전부가 양측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좌장을 맡은 노경상 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토론회는 계열화 사업의 해답을 찾기 위한 것으로, 계열화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사육농가와 계열주체간의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어진 것으로 안다"며 "끝장 토론을 통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서로간의 갈등을 명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계열화사업과 관련한 법제정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원활한 토론의 진행을 위해 노경상 원장은 토론의 핵심 포인트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로 구분되어 지는 계열화 농가에 대한 계약방식의 문제 ▲농가소득 측면에서 육계 계열화 사업의 성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계열화 사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헌 ▲글로벌 시대에서 양계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부회장

“현재 하림이 시행하고 있는 상대평가 하에서는 다른 농가와 의 사육성적 비교를 통해 소득 이 결정되기 때문에 농가간의 불신이 조장되는 등 많은 문제 점이 내재되어 있다”



하림 정문성 전무

“2000년부터 상대평가를 도입한 이후 농가의 생산성을 가능할 수 있는 사료요구율이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농가의 생산성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양측 상대평가방식에 대해 침예하게 대립

이 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하림이 농가와 맺고 있는 위탁 사육방식인 상대평가에 대해 대한양계협회와 하림이 서로 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대한양계협회의 이홍재 부회장은 “현재 하림이 시행하고 있는 상대평가 하에서는 다른 농가와의 사육성적 비교를 통해 소득이 결정되기 때문에 농가간의 불신이 조장되고 병아리와 사료품질이 농가의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육계계열화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조사에 응한 육계농가 중 97%는 현재 계열주체와 맺고 있는 계약서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육경비부분에서는 98%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사육제경비를 현실화해 농가들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림의 정문성 전무는 “2000년부터 상대평가를 도입한 이후 농가의 생산성을 가능할 수 있는 사료요구율을 보면, 상대평가를 도입하기 전인 1997년에는 평균 2.0 이상이던 것이 2009년을 기준으로 평균 사료요구율이 1.6을 기록해 1997년도 대비 0.39의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농가의 생산성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히고 “계열화 사업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은 “지금의 계열화 사업에서 하림은 지금껏 자신들이 잘한 것만 주장하고 있지 약자인 농가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육관계가 일방통행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며 “하림은 현재 미국식 계열화를 벤치마킹해 이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데 국가규모나 농가 규모로 봤을 때 미국식 계열화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식 계열화를 한다면서 미국에는 약자인 농가를 보호하는 법이 존재하는데 이 법은 왜 도입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하림의 김홍국 회장

은 “상대평가는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절대평가에서는 농가가 병아리와 사료를 직접 구매하는 반면 상대평가에서는 생산과 관련된 모든 리스크를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병아리나 사료의 품질이 좋지 않으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회사로 돌아오므로 사료와 병아리의 품질을 균일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열화 사업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 여부 설전

육계계열화 사업을 통한 농가소득 측면에서도 양측의 설전이 이어졌다. 하림의 정문성 전무는 “하림은 그 동안 수직계열화 사업을 통해 시장변화에 대응하고 위험요소를 흡수함으로써 사육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공급불안을 해소해 투기성이던 닭고기 사업을 안정된 닭고기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말하며 “실제로 수직계열화 사업을 시작한 이후 1994년 사육농가의 연평균 조수익 2천500만원에서 2010년에는 1억600만원으로 4.2배 증가해 이는 200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도시근로자의 연평균 소득 약 4천600만원보다 2배가 넘고 사육 규모면에서도 1994년 2만5천수에서 현재는 5만5천수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홍재 부회장은 “도시근로자와 농가의 조수익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도시근로자의 경우 연평균 소득액이 모두 순소득이지만 농가의 조수익은 시설비, 사육제경비, 인건비 등이 모두 빠져 있으므로 이를 가지고 농가의 소득이 크게 향상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계열주체, 농가와 상생 의지 안보여

대한양계협회는 계열화 사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헌에 대해 농가와 계열주체간의 상생을 역설했다. 이준동 회장은 “농가들은 그동안 계열주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3~4개월간 사육비도 받지 않은 채 그들을 도와주는 등 지

금의 계열화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 든 것은 농가들의 희생이 뒷받침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하림에서는 농가의 어려움은 생각하지 않은 채 정부에서 1천 200억의 정책자금을 3~4%의 이자로 빌려 이를 다시 농가에게 7.5%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기고 수입 닭고기를 가장 많이 쓰는 등 농가와 상생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양계협회의 주장에 대해 하림의 김홍국 회장은 "지난 10년간 하림이 얻은 이익은 720억으로 이는 낫 한 마리당 35원의 이익을 본 것이고, 예전의 개별사육에서는 사료, 병아리 판매와 닭을 가공해 판매한 것에서도 이익이 창출되었는데 계약사육으로 바꾼 이후에는 오히려 수익이 감소했다"고 밝히며 "오히려 지난 10년간 하림이 수당 평균 35원의 이익을 가져가는 동안 농가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수당 145원에서 250원의 수익을 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에서 3~4%의 낮은 이자로 정책자금을 받아 농가에게 7.5%로 빌려주며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정부로부터 정책자금을 받아 농가에게 빌려줬다는 것은 감사에서 바로 걸리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는 정책자금을 받아 HACCP, 도계장 신축 등에 사용했기 때문에 농가에게 정책자금이 흘러 들어간 일은 절대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수입 닭고기를 가장 많이 쓴다는 지적에 대해 "하림이 수입 닭고기를 가장 많이 쓴다는 것은 수출입 동관조사를 해보면 바로 알 수 있듯이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수입 닭고기를 쓰는 것은 구색 맞추기를 위한 것이며 그나마도 전체에서 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림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축공제보험에 대해서도 서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양계협회 이준동 회장은 "농가들이 질병, 자연재해 등의 피해를 봤을 때 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가축소득공제보험은 현재

정부에서 50%를 지원받고 나머지 50%부분에 대해서 하림이 80%, 농가가 20%를 부담한다고 하는데 농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병아리와 사료비에서 공제해서 가져간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하림의 정문성 전무는 "우리는 정부의 지원금을 뺀 나머지 50%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80%를 지급하고 농가에게는 20%의 보험금만 부담시킨다"며 가축공제보험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제시했다.

양계산업의 경쟁력 제고위해 농가와 계열주체간 소통 필요

FTA 등 앞으로 닥쳐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양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홍재 부회장은 "농가와 계열주체간의 소통을 통해 서로간에 쌓여 있는 불신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식 수직 계열화를 무조건 따라하기보다는 농가들이 계열주체와 동등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수평계열화 사업을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논산에서 육계 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김용규 씨는 "하림에서는 연금적립금이 농가의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하림과 3년 이하의 위탁사육을 하게 되면 연금적립금을 한푼도 받을 수가 없다"며 "연금적립금은 분명히 농가의 것이라 했는데 왜 돈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림의 정문성 전무는 "연금적립금은 하림만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육비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3년이란 기간을 설정한 것은 농가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현재 3년 이후에는 연금적립금의 70%를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농가협의회와 논의하여 차후부터는 3년 이상 위탁사육을 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100%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

“하림은 농가의 어려움은 생각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이득만 챙기고 수입 닭고기를 가장 많이 쓰는 등 농가와 상생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수입 닭고기를 쓰는 것은 구색 맞추기를 위한 것이며 그나마도 전체에서 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하림의 김홍국 회장



2010 전국 육계인 순회교육 전남, 경기, 경남에서 실시 구제역으로 인해 경북, 충청, 제주 교육은 모두 연기

육계자조금 활성화 방안과 육계산업 발전을 위한 전국 육계인 순회교육이 전라북도 지역에 이어 전남, 경기도, 경남 지역에서 실시됐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지난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나주, 함평 등 전라남도 지역과 포천, 안성 등 경기도 지역, 29일에는 경남 고성 지역 육계농가들을 대상으로 2010 전국 육계인 순회교육을 개최했다. 이로써 지난 11월 17일 전북지역에서 시작된 이번 순회 교육은 경상남도 고성까지 총 8개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육계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순회교육은 육계자조금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내 양계산업의 안정화와 FTA 등에 대비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와 더불어 정부의 양계(질병 및 방역)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전국의 육계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난 23일 대한양계협회 전라남도 지회에서 진행된 전라남도 첫 번째 교육인 나주교육에서는 나주, 영암, 화순 등에서 많은 육계농가들이 참석하였고 다음날인 24일에는 함평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남지역 두 번째 교육이 실시

되었다. 전북지역에 이어 전남지역에서도 많은 육계인들로 교육장이 가득 들어차 이번 순회교육에 대한 육계인들의 높은 열의를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 이후 경기도 지역 교육은 25일과 26일 양일간 각각 포천 용정결혼회관과 안성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되었고 29일에는 고성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상남도 지역 첫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번 순회교육에서는 각 도청의 축산담당 공무원들이 정부가 실시하는 양계관련 정책 및 추진계획에 대해 농가들에게 설명했고 양계관련 전문가들이 AI 등 육계질병 및 방역 대책에 대한 강의가 계속되었다. 이어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부회장은 육계자조금에 대한 홍보와 거출 향상 방안, 내년에 설립 예정인 육계조합, 육계계열화 사업에 대해 농가들에게 보고했다.

한편, 지난 11월 17일 실시된 전북지역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총 13개 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이번 육계인 순회교육은 11월 29일 경북 안동에 있는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농가들의 모임을 자제해 달라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권고에 따라 대한양계협회는 더이상 교육을 진행하기에 부리가 있다고 판단, 경북 상주를 포함한 충청도, 제주도의 교육일정을 부기한 연기했다. 🍌



전남도지역(①, ②)
 • 2010년 11월 23일(화)
 • 대한양계협회 전라남도지회

전남도지역(③, ④)
 • 2010년 11월 24일(수)
 • 함평농업기술센터

경기도지역(⑤, ⑥)
 • 2010년 11월 25일(목), 26일(금)
 • 포천 용정결혼회관, 안성농업기술센터

경남도 지역(⑦, ⑧)
 • 2010년 11월 29일(월)
 • 고성농업기술센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재발 방지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올해 초 두 차례의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깊은 시름과 함께 시작된 2010년 경인년은 새해를 한 달 남겨두고 또다시 구제역이라는 악몽을 가져다주었다. 현재 경상북도 일대에서 32건의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그 피해는 금년 발생 중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외에서 발견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는 지금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사례는 지난 10월말 일본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바이러스 검출에 이어 가금에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이고, 두 번째 사례는 이달 국내 야생조류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베트남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발생 건수가 4배까지 증가하는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예년에 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일본과 유사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에 우리 방역당국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지역에서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바이러스가 농가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완벽한 방역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질병 발생 방지 및 국내 청정화와 더불어 안정적인 가금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가금농가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의지 뿐만 아니라, 다음의 기본적인 방역관리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첫째, 가금농가는 모든 농장 출입자 및 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소독 및 농장의 주기적인 소독을 통하여 열 번의 치료보다 한 번의 예방조치가 보다 효과적임을 유념하여 자율적인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농장 소유자나 관리자도 외출 후 귀가시 옷을 갈아입고 축사에 출입할 때는 작업복과 장화를 착용하고 장화 및 손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축산농가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농장의 위생과 소독 등 방역관리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의심축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여권번호 등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농장에 들어가기 전에 입었던 옷이나 신발 및 개인 휴대품을 세척·소독하고 축산물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소각하여 처리한다. 농장에서 착용할 작업복과 장화를 따로 지급하여 농장 근무 시 지켜야할 방역관리사항을 숙지시켜야 한다.

셋째, 사료저장통 주변 등 축사 주위의 사료를 깨끗이 치워 야생조류 등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사전에 제거하고 조류인플루엔자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야생조류 및 야생동물(쥐·고양이)이 축사·분뇨처리장내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문단속, 그물망 설치, 비닐 포장 등으로 철저히 차단한다. 또한, 주기적인 살



주이석 부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방역부

충·구서(쥐잡기) 및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개나 고양이도 반드시 일정구역에 가두어 농장내의 가축전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한다.

넷째, 철새 도래지, 가축시장·도계장 등 가금관련 시설 및 농장의 방문을 피하고, 일본·중국·베트남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 하되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에는 농장이나 축산 관련 시설의 방문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만약 이들 나라에 방문한 경우에는 입국 시 공항내 검역원에 신고하여 소독 및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고 최소한 5일 이상은 가금사육 농장 방문을 삼가야 한다.

다섯째, 매일 사육가금의 상태를 관찰하여 조류인플루엔자 특이 의심 증상(발병초기 침울·졸음, 안면부 심한 부종·괴사, 닭벼슬 출혈 및 다발성 괴사, 폐사 등)을 가진 가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지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신고(국번 없이 1588-4060 또는 1588-9060) 하여야 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국내 과거 발생 사례를 분석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겨울 철새 도래시기인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를 'AI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방역조치를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2008년에는 특별방역 대책기간이 훨씬 지난 4월에 HPAI가 발생됨에 따라 2008년 7월 22일부터 AI 유입여부를 조기에 검색하여 방역관리 할 수 있는 'AI 상시예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기존 농가의 신고에 의존해온 방식에서 탈피하여 조류인플루엔자 국내 유입가능성이 높은 철새 및 그 분변, 감염되어 전파요인이 되는 오리 농장, 재래시장, 기타 가금류 검사 등 경로별로 연중 상시 예찰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예찰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뿐만 아니라 고병원성으로 변이 가능한 H5나 H7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하여도 방역조치를 취하여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재발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외국으로부터의 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탐지견을 투입하여 해외 여행객의 휴대 축산물을 집중 검색, 입국자에 대한 발판 소독 실시 및 애완조류 등에 대한 밀수 단속 등 공·항만에서의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역당국의 방역관리만으로는 국가 재난형 질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재발 방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농가 단위의 소독 등 자율적인 차단방역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다른 대부분의 질병이 그러하듯 조류인플루엔자도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경제적이며 효율적이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농가의 차단방역 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다면 언제 다시 이 무서운 재앙이 시작될지 모른다. 나 하나로 인하여 나와 내 이웃 나아가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되겠다. 방역당국의 철저한 방역관리와 농가 단위의 자율적인 차단 방역이 유기적인 협조 체계 하에 이루어진다면 조류인플루엔자의 위협을 최대한 막을 수 있고 설사 그 위협이 현실이 된다 하여도 그로 인한 피해는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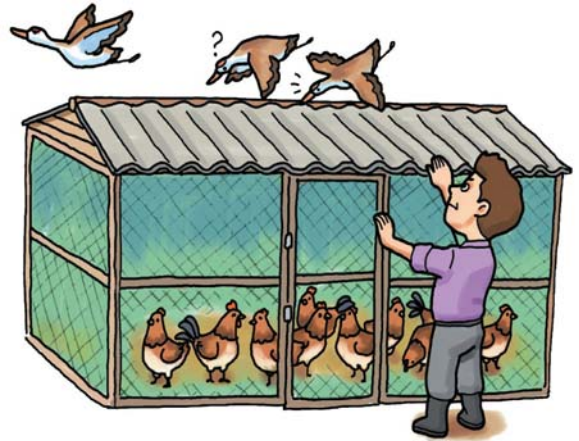
“방역당국의 철저한 방역관리와 농가 단위의 자율적인 차단 방역이 유기적인 협조 체계 하에 이루어진다면 조류인플루엔자의 위협을 최대한 막을 수 있고 설사 그 위협이 현실이 된다 하여도 그로 인한 피해는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축산농가에서 지켜야 할 일



▲ 차단방역 : 출입자·출입차량 철저히 소독



▲ 야생조류 출입차단 : 문단속 그물망 설치



▲ 농장소독 : 철저한 소독, 살충과 쥐잡기

■ 2~3회/주 축사와 주변 소독 철저



▲ 발생국 여행 및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 부득이하게 여행한 경우 신발세척,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후 귀가

야생동물의 가금류 접촉방지

- 사육시설, 사료보관시설의 야생조류 침입 방지 그물망 설치, 창문 닫음
- 사육농장 주변 및 경계에 생석회 도포
- 사육시설 주변의 먹잇감 제거 등 청결 유지
- 쥐 및 매개곤충을 구제하고 주기적으로 소독
- 철새도래지·야생조류 서식지 방문 자제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지역) 방문 금지

농장차단방역 질병유입 방지

- 농장 출입구는 1개소는 제한하고 출입 통제
- 농장출입 사람·차량은 전문약제로 소독 철저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사장·행사장·모임 등 출입금지
- 발생지역 방문한 사람은 2주 이상 농장출입 금지

육계자조금 성공 전제조건은 무임승차를 없애는 것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장관수 주임

요즘 스마트폰이 대세이다. 100만원을 호가하는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이동전화 송수신 기능 외에도 인터넷, 뉴스검색, 게임, 내비게이션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팔방미인’ 스마트폰이라도 그 사용법이나 가치를 모르면 그냥 단순한 전화기에 불과하다. 무궁무진한 기능을 100% 활용하려면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육계자조금사업 또한 스마트폰과 비슷하다. 기능은 뛰어나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있으나 마나한 애플단지가 될 수 있다.

자조금사업은 제도적으로 농가가 원하지 않는 사업은 시행할 수가 없다. 육계자조금사업은 정부나 축산단체에서 만든 것이 아니다. 농가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만든 제도이다. 지역 육계농가들의 대표인 대의원이 해당 지역 농가의 의견을 취합하여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대의원간에 협의하여 모든 육계자조금사업이 시행된다. 육계자조금 사무국에서 독단적으로 사업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농가의 대표인 대의원과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및 외부인사(소비자단체, 유통전문가, 학계 등)의 승인이 있어야 자조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자조금 사무국은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집행하기 전에 각 축산단체장과 농협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농식품부의 감사를 받는 등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선 현재 자조금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자조금이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자조금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되물을 수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은 육계자조금사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미국의 경우 육계산업은 이미 계열화가 이루어져있다. 즉 자조금사업을 안하는 것이 아닌 못하는 것이다. 이는 확실히 구분해서 생각해야할 문제다. 자조금은 농가들이 주체가 되는 가장 민주적인 제도이다. 미국에서도 못하고 있는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 자조금사업은 전국의 육계를 키우는 육계농가 여러분의 자금을 모아 전국 육계농가 분들에게 되돌려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육계자조금사업은 내·외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조금에 대한 육계농가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홍보가 부족하여 거출률이 높지 못한 점이 내적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다 외적으로는 각 축산단체들의 의견 불일치로 육계자조금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육계자조금사업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 그 첫 번째는 절대 무임승차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조금사업은 전국의 육계를 키우는 육계농가 여러분의 자금을 모아 전국 육계농가 분들에게 되돌려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타 축종 중 한우, 양돈 자조금의 경우 매년 거출금액이 증가되고 있고 농가의 거출률도 100%에 가깝게 조성되고 있다. 낙농자조금의 경우 육계자조금과 비슷하게 원유를 회사에 전적으로 납품하는 구조이지만 낙농산업도 자조금은 농가에게서 거출하고 있다. 이들 자조금이 구심점이 되어 농가의 수익을 간접적으로 보존해주고 있는 상황이므로 타축종의 농가는 자조금사업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 육계자조금 사업 또한 마찬가지이다.

단시일 내에 수익을 창출하기 힘들고 육계산업 전체에 대한 변화를 꾀하기는 힘들겠지만, 육계자조금사업은 생산자의 조직화를 통해 다양한 농가교육과 생산자의 정책형성의 참여가 진행된다면 산업의 장기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10년 육계자조금 납부실적 (2010년 12월 22일 현재)

육계자조금 · 12

도계장	대표	금액	일자	도계장	대표	금액	일자	도계장	대표	금액	일자	도계장	대표	금액	일자	도계장	대표	금액	일자				
	남찬우	207,000	09년 09월		배귀자	73470	10년 7월		대구	113,058	10년 2월		박상룡	87250	10년 6월		김익진	91878	10년 10월		장원호	110,850	10년 1월
	최은숙	476,200	09년 09월		이승구	178,020	10년 7월		김조광	22998	10년 2월		소명기	93430	10년 6월		박우경	101,775	10년 10월		전계희1	351,300	10년 1월
	최병환	271,550	09년 09월		장재기	71730	10년 7월		황봉서	43017	10년 2월		유승목	106,140	10년 6월		오경길	110,571	10년 10월		전계희2	119,640	10년 1월
	이영재	274,000	09년 09월		이성구	132,540	10년 9월		조이종	30552	10년 2월		이영재	85341	10년 6월		박재민	126,823	10년 10월		정경희	85530	10년 1월
	김길태	111,900	09년 09월		박상천	59940	10년 09월		신근호	45575	10년 2월		조영석	121,566	10년 7월		조병기	86985	10년 10월		정길영	81630	10년 1월
	남찬우	208,700	09년 09월		최덕환	195,090	10년 09월		오해진	39266	10년 2월		박봉석	31110	10년 7월		박상용	115,218	10년 10월		정탁영	62640	10년 1월
	최은숙	480,050	09년 09월		김종일	107,820	10년 09월		이영재	338,243	10년 2월		황봉서	43320	10년 7월		이준기	79341	10년 10월		정연홍	191,610	10년 1월
	배귀자	117,100	09년 10월		김종일	59340	10년 09월		김현옥	190,377	10년 2월		임준경	71850	10년 7월		유승목	102,963	10년 10월		정영환	111,680	10년 1월
	김지영	276,450	09년 10월		이완신	112,020	10년 09월		박우경	86228	10년 2월		이상열	30428	10년 7월		우경길	127,695	10년 10월		정용택	177,600	10년 1월
	김원상	331,400	09년 10월		이완신	166,950	10년 09월		조병기	91251	10년 2월		심근호	44424	10년 7월		강남희	114,375	10년 1월		정용택	62340	10년 1월
	송명석	144,200	09년 11월		김유근	60180	10년 09월		박경애	58308	10년 2월		임은구	83901	10년 7월		강신철	143,250	10년 1월		정종훈	86160	10년 7월
	이영구	306,600	09년 11월		김유근	79980	10년 09월		김혜연	17445	10년 3월		오해진	26288	10년 7월		강신철	143,250	10년 1월		정현구	65970	10년 1월
	김길태	123,750	09년 11월		남찬우	125,820	10년 09월		오세원	31662	10년 3월		김광수	69579	10년 7월		공기영	105,882	10년 1월		조복학	107,100	10년 2월
	남찬우	223,850	09년 11월		박병호	186,990	10년 09월		박봉석	33540	10년 3월		박우경	85408	10년 7월		박기준	189,000	10년 1월		조환웅	57420	10년 2월
	신용민	159,729	09년 11월		오해진	126,747	10년 09월		안병수	24488	10년 3월		장나용	101,997	10년 7월		구광희	99330	10년 1월		재홍현	86160	10년 1월
	최은숙	502,050	09년 11월		이준기	136,770	10년 09월		김두수	14202	10년 3월		김의선	94548	10년 7월		구자성	116,520	10년 1월		권병진	137,970	10년 2월
	김영선	161,550	09년 11월		신용민	90249	10년 09월		춘천	147,661	10년 3월		이영재	99098	10년 7월		구자성	92310	10년 1월		하복음	156,000	10년 1월
	배동원	167,650	09년 12월		최환근	181,800	10년 09월		신근호	15813	10년 3월		이준기	81789	10년 7월		권혁부	131,400	10년 1월		한정도	137,820	10년 1월
	최병환	310,125	09년 12월		한병권	147,150	10년 09월		김원기	30660	10년 3월		한종명	106,734	10년 7월		김일철	130,800	10년 1월		호종삼	73470	10년 1월
	이재학	178,425	09년 12월		김정호	128,700	10년 09월		김광수	24150	10년 3월		이영재	39990	10년 7월		김관수	136,890	10년 1월		홍중기	204,570	10년 1월
	송명석	139,900	10년 1월		김영구	112,110	10년 09월		정화영	24158	10년 3월		임순호	132,684	10년 7월		김광석	213,670	10년 1월		황승용	93060	10년 7월
	이영구	302,850	10년 3월		박상용	169,290	10년 09월		대구	63669	10년 3월		정중환	208,290	10년 7월		김길태	142,440	10년 1월		황의원	222,090	10년 1월
	김원상	331,200	10년 10월		송병준	138,080	10년 09월		이영재	272,361	10년 3월		이영재	236,469	10년 7월		김남구	84930	10년 1월		가순숙	126,350	10년 2월
	신용민	113,610	10년 1월		전덕재	63870	10년 09월		이준기	81708	10년 3월		박경애	61766	10년 8월		김동국	207,540	10년 1월		권영택	212,940	10년 2월
	배동원	96060	10년 2월		박중성	169,917	10년 09월		김주백	69947	10년 4월		조병기	82371	10년 8월		김미자	186,000	10년 1월		권영택	110,960	10년 2월
	김길태	190,50	10년 2월		정중환	166,809	10년 09월		김정호	148,520	10년 4월		장나용	102,903	10년 8월		김봉수	118,710	10년 1월		권오근	71040	10년 2월
	김길태	35530	10년 2월		정중호	90480	10년 09월		김현중	148,520	10년 4월		이영재	39990	10년 7월		김승기	48720	10년 1월		권오근	90240	10년 2월
	배동원	30810	10년 2월		이영재	144,403	10년 09월		박상룡	95244	10년 4월		오경길	114,561	10년 8월		김광석	282,570	10년 1월		권오근	173,460	10년 2월
	배동원	57750	10년 3월		김원상	116,307	10년 09월		이영재	75735	10년 4월		오경길	151,140	10년 8월		김영기	124,260	10년 1월		권혁산	101,220	10년 2월
	최은숙	276,270	10년 3월		최재기	38520	10년 09월		이영재	130,119	10년 4월		오경길	151,140	10년 8월		김용정	120,810	10년 1월		권화순	144,540	10년 2월
	이재학	109,195	10년 3월		배귀자	70620	10년 09월		조병기	83286	10년 4월		오경길	121,398	10년 8월		김동민	130,470	10년 1월		김동민	30030	10년 2월
	김원상	194,580	10년 3월		오영목	78487	10년 09월		박우경	93885	10년 4월		유승목	101,092	10년 8월		김홍수	89850	10년 1월		김동민	116,820	10년 2월
	남찬우	140,520	10년 3월		오영목	49581	10년 09월		이현우	26768	10년 4월		김의선	93039	10년 8월		김일철	100,380	10년 1월		김제현	96390	10년 2월
	배귀자	97410	10년 3월		최은숙	71040	10년 09월		김주백	69947	10년 4월		이재술	28599	10년 8월		김종석	74070	10년 1월		김승기	95220	10년 2월
	최은숙	257,730	10년 3월		최은숙	206,670	10년 09월		이영재	29442	10년 4월		이영재	59138	10년 8월		김종석	92250	10년 1월		김영택	292,560	10년 2월
	이영재	161,490	10년 3월		김진우	70149	10년 09월		정명호	22866	10년 4월		영천	75702	10년 8월		김중호	61800	10년 1월		김영택	152,640	10년 2월
	김원상	176,790	10년 3월		박승용	146,070	10년 09월		박봉석	110,754	10년 4월		박봉석	66486	10년 8월		김진홍	170,400	10년 1월		김오식	168,550	10년 2월
	박대순	136,845	10년 4월		장재기	63990	10년 09월		황봉서	14391	10년 4월		오세원	72098	10년 8월		나승룡	119,400	10년 1월		김진홍	134,690	10년 2월
	이영구	68310	10년 4월		김종일	139,880	10년 09월		이수천	46185	10년 4월		김혜연	27744	10년 8월		류대현	170,940	10년 1월		김경희2	166,720	10년 2월
	이영구	122,580	10년 4월		김진우	131,310	10년 09월		조영석	77376	10년 4월		조영석	30924	10년 8월		박보경	104,550	10년 1월		김정수	104,130	10년 2월
	남찬우	130,200	10년 4월		남찬우	130,550	10년 09월		이병규	60455	10년 4월		황봉서	13200	10년 8월		박사희	159,150	10년 1월		김태연	109,440	10년 2월
	배귀자	84690	10년 4월		이완신	135,650	10년 09월		김주백	30146	10년 4월		박정희	52818	10년 9월		박정희	104,280	10년 1월		김형근	48930	10년 2월
	배동원	92550	10년 4월		이완신	102,450	10년 09월		신근호	48218	10년 4월		이영구	15648	10년 9월		박종화	82500	10년 1월		민이식	115,280	10년 2월
	김원상	130,890	10년 5월		최환근	117,770	10년 10월		김광수	208,299	10년 4월		이재술	14994	10년 9월		박종희	56940	10년 1월		박경태	154,590	10년 2월
	정중성	228,879	10년 5월		박병호	152,800	10년 10월		김주백	25669	10년 5월		박봉석	29274	10년 9월		박종희	88530	10년 1월		박원도	188,150	10년 2월
	최은숙	288,020	10년 09월		박병호	75540	10년 10월		조이종	7,980	10년 5월		오세원	13569	10년 9월		백종영	125,640	10년 1월		박종식	138,350	10년 2월
	이영재	151,740	10년 09월		오해진	44888	10년 10월		이예진	13434	10년 5월		김재현	72156	10년 9월		변인숙	144,480	10년 1월		백종태	153,300	10년 2월
	신용민	109,795	10년 09월		오해진	72798	10년 10월		임준경	23580	10년 5월		조영석	60999	10년 9월		서준복	139,050	10년 1월		서영태	128,780	10년 2월
	배귀자	70170	10년 09월		이준수	63420	10년 10월		박봉서	138,229	10년 5월		황봉서	37584	10년 9월		성상모	36180	10년 1월		성황용	38970	10년 2월
	이영구	191,400	10년 09월		이준수	59160	10년 10월		황봉서	29796	10년 5월		영천	7,500	10년 9월		순현동	188070	10년 1월		신용삼	82350	10년 2월
	김용근	145,470	10년 09월		이영구	129,180	10년 10월		영천	31461	10년 5월		신근호	127,416	10년 9월		송영태	117,120	10년 1월		신인수	146,880	10년 2월
	김종일	166,260	10년 09월		정중호	194,550	10년 10월		김정호	45039	10년 5월		김정호	43701	10년 9월		신미숙	147,360	10년 1월		안영태	115,290	10년 2월
	박상천	65820	10년 09월		한병권	92550	10년 10월		오해진	37966	10년 5월		순석현	67866	10년 9월		신순규	120,180	10년 1월		안재숙	81150	10년 2월
	장재기	63360	10년 09월		한병권	96000	10년 10월		심근호	71991	10년 5월		이영구	44588	10년 9월		신정영	59340	10년 1월		양삼순	135,510	10년 2월
	장재기	55880	10년 09월		김영구	61830	10년 10월		이영진	15309	10년 5월		오해진	42708	10년 9월		안경호	179,910	10년 1월		연규호	78480	10년 2월
	남찬우	64890	10년 09월		김영구	54240	10년 10월		이상철	63120	10년 5월		김철수	106,011	10년 9월		안상기	120,420	10년 1월		염재승	279,510	10년 2월
	남찬우	73440	10년 09월		김유근	144,380	10년 10월		박경애	54468	10년 5월		이준기	75666	10년 9월		안우현	179,130	10년 1월		오홍진	148,640	10년 2월
	김원상																						

도재정	대표	금액	일자
	정재종	82230	10년 2월
	정영숙	66440	10년 2월
	경한상	100,560	10년 2월
	정한용	41250	10년 2월
	정호진	157,660	10년 2월
	정희차	126,660	10년 2월
	조복형	5,400	10년 2월
	조흥식	40200	10년 2월
	조현성	69540	10년 2월
	최기수	90120	10년 2월
	최병용	157,460	10년 2월
	최영수	102,460	10년 2월
	최원술	158,400	10년 2월
	한경태	100,560	10년 2월
	한서용	108,980	10년 2월
	한승우	111,390	10년 2월
	한용현	132,680	10년 2월
	허정재	106,380	10년 2월
	허창행	87750	10년 2월
	홍승기	102,000	10년 2월
	황유동	73260	10년 2월
	기순옥	63960	10년 3월
	박기준	102,600	10년 3월
	구광희	80400	10년 3월
	구본영	77340	10년 3월
	구재노	89520	10년 3월
	권영학	96120	10년 3월
	김일섭	125,220	10년 3월
	김경선	80190	10년 3월
	김광석	208,710	10년 3월
	김길래	149,340	10년 3월
	김남규	73500	10년 3월
	김동국	250,560	10년 3월
	김병서	26310	10년 3월
	김봉숙	108,360	10년 3월
	김승기	148,970	10년 3월
	김영기	127,170	10년 3월
	김영운	76050	10년 3월
	김오식	82860	10년 3월
	김영경	114,660	10년 3월
	김중호	60420	10년 3월
	김태규	168,600	10년 3월
	김향룡2	73620	10년 3월
	나승훈	111,600	10년 3월
	류대현	168,960	10년 3월
	박동봉1	12,400	10년 3월
	박보경	110,180	10년 3월
	박시용	94050	10년 3월
	박정희	138,660	10년 3월
	박승희	6,000	10년 3월
	박홍진	120,260	10년 3월
	백윤희	84780	10년 3월
	백종일	12,970	10년 3월
	변인숙	126,060	10년 3월
	서정목	73440	10년 3월
	서판근	3,600	10년 3월
	서훈복	140,400	10년 3월
	손동문	115,380	10년 3월
	손현동	182,460	10년 3월
	송영태	107,730	10년 3월
	신미순	144,660	10년 3월
	신순권	90030	10년 3월
	안우현	171,300	10년 3월
	아성일	116,680	10년 3월
	연상훈	116,490	10년 3월
	오재광	79320	10년 3월
	유명곤	155,370	10년 3월
	유문조	134,700	10년 3월
	유영매	114,150	10년 3월
	윤중영	101,770	10년 3월
	이규행	86520	10년 3월
	이금옥	255,970	10년 3월
	이문선	91170	10년 3월
	이상길	75120	10년 3월
	이상희	141,210	10년 3월
	이순복1	3,480	10년 3월
	이순복2	112,920	10년 3월
	이재형	141,300	10년 3월
	이지은	91230	10년 3월
	이학로	155,310	10년 3월
	임광순	62220	10년 3월
	장봉기	124,020	10년 3월
	장정일	157,860	10년 3월
	장현숙	90900	10년 3월
	장현호	75510	10년 3월

제리부

도재정	대표	금액	일자
	전계희1	66570	10년 3월
	전계희2	55920	10년 3월
	전동석	129,390	10년 3월
	정길영	59100	10년 3월
	정상훈	208,485	10년 3월
	정연홍	188,650	10년 3월
	정영범	188,610	10년 3월
	장종진	39900	10년 3월
	장종훈	70710	10년 3월
	정한상	101,160	10년 3월
	조승희	223,500	10년 3월
	조현우	296,202	10년 3월
	전병진	132,090	10년 3월
	최기수	87240	10년 3월
	최원술	174,900	10년 3월
	표복수	93720	10년 3월
	호중삼	119,010	10년 3월
	홍승해	130,560	10년 3월
	홍승기	108,500	10년 3월
	황유동	124,050	10년 3월
	황의원	249,750	10년 3월
	강신영	141,480	10년 4월
	고희정	122,220	10년 4월
	공영미	115,644	10년 4월
	권영관	214,800	10년 4월
	권영현	118,260	10년 4월
	권오근	68940	10년 4월
	권희희	192,840	10년 4월
	권혁선	153,150	10년 4월
	권건수	180,930	10년 4월
	김동란	91110	10년 4월
	김남성	107,100	10년 4월
	김동국	159,360	10년 4월
	김미자	82140	10년 4월
	김상관	222,300	10년 4월
	김진호	88500	10년 4월
	김지현	78900	10년 4월
	김영선	149,760	10년 4월
	김형섭	153,900	10년 4월
	김옥천	135,360	10년 4월
	김웅수	91620	10년 4월
	김인숙	121,950	10년 4월
	김중식	89550	10년 4월
	김중호	53460	10년 4월
	김창수	97440	10년 4월
	김태연	108,300	10년 4월
	김현선	159,780	10년 4월
	김현옥	170,100	10년 4월
	류대현	88560	10년 4월
	민이식	107,700	10년 4월
	박원모	98970	10년 4월
	박해성	83910	10년 4월
	방승길	214,710	10년 4월
	서영태	120,060	10년 4월
	성장모	35340	10년 4월
	손승민	109,200	10년 4월
	신정미	105,140	10년 4월
	신인숙	152,430	10년 4월
	안경순	182,700	10년 4월
	안재순	71820	10년 4월
	양삼순	135,300	10년 4월
	오종성	135,660	10년 4월
	우희준	140,748	10년 4월
	이규행	55890	10년 4월
	이금옥	54120	10년 4월
	이귀환	129,510	10년 4월
	임운홍	92700	10년 4월
	이병기	74700	10년 4월
	이복영	71460	10년 4월
	이상희	84000	10년 4월
	이성진	53610	10년 4월
	이영숙	138,720	10년 4월
	이영근	284,700	10년 4월
	이영문	204,150	10년 4월
	이원익	83910	10년 4월
	이재환	97260	10년 4월
	이정규	129,150	10년 4월
	이현호	90910	10년 4월
	이홍재	218,130	10년 4월
	임광순	63150	10년 4월
	임윤순	215,460	10년 4월
	장재운	93600	10년 4월
	전계희2	65460	10년 4월
	전도희	172,470	10년 4월
	전재구	53940	10년 4월

제리부

도재정	대표	금액	일자
	정경화	97560	10년 4월
	정길종	86130	10년 4월
	정덕영	59520	10년 4월
	정상윤	4,200	10년 4월
	정재종	52710	10년 4월
	정수중	173,400	10년 4월
	정영한	117,680	10년 4월
	정용순	159,000	10년 4월
	이학로	145,950	10년 4월
	정한용	208,310	10년 4월
	정현우	62940	10년 4월
	정호진	148,280	10년 4월
	정희차	125,160	10년 4월
	조용식	42930	10년 4월
	조현성	65760	10년 4월
	채홍철	83520	10년 4월
	최기수	79740	10년 4월
	최병용	71310	10년 4월
	최영자	95280	10년 4월
	최원수	56610	10년 4월
	하복유	67590	10년 4월
	한경태	101,620	10년 4월
	한서용	87720	10년 4월
	한승우	106,682	10년 4월
	한용현	126,000	10년 4월
	합인영	125,040	10년 4월
	허창행	80490	10년 4월
	홍미숙	72000	10년 4월
	홍석희	104,550	10년 4월
	강난희	138,980	10년 5월
	박기준	87420	10년 5월
	권영학	86040	10년 5월
	권오근	108,300	10년 5월
	김광석	206,880	10년 5월
	김길래	142,920	10년 5월
	김남규	78660	10년 5월
	김대현	289,470	10년 5월
	김동국	241,470	10년 5월
	김영기	128,640	10년 5월
	김오식	159,510	10년 5월
	김의영	69130	10년 5월
	김경근	189,000	10년 5월
	김진용	179,490	10년 5월
	김태규	185,790	10년 5월
	나승훈	113,100	10년 5월
	류대현	62010	10년 5월
	박복희	146,460	10년 5월
	박시용	169,660	10년 5월
	박영순	149,340	10년 5월
	박원모	65100	10년 5월
	박정희	137,682	10년 5월
	박지만	89910	10년 5월
	박홍진	97290	10년 5월
	백종대	137,610	10년 5월
	변인숙	138,080	10년 5월
	서정목	89230	10년 5월
	서판근	84120	10년 5월
	서훈복	135,770	10년 5월
	서향용	41280	10년 5월
	손현동	176,910	10년 5월
	송영태	116,460	10년 5월
	송장열	264,090	10년 5월
	송하정	120,480	10년 5월
	신미순	141,720	10년 5월
	신용윤	80940	10년 5월
	이성원	148,910	10년 5월
	연규호	86940	10년 5월
	연상훈	101,660	10년 5월
	연관섭	313,440	10년 5월
	연규호	100,290	10년 5월
	오세광	76620	10년 5월
	유명곤	148,470	10년 5월
	유문조	201,600	10년 5월
	유성종	171,870	10년 5월
	유재하	84060	10년 5월
	윤미자	107,300	10년 5월
	윤종수	102,150	10년 5월
	이교환	85530	10년 5월
	이금옥	201,000	10년 5월
	이대식	94530	10년 5월
	이동홍	207,540	10년 5월
	이만근	170,670	10년 5월
	이명규	36940	10년 5월
	이문선	110,040	10년 5월
	이미영	107,160	10년 5월

제리부

도재정	대표	금액	일자
	이병일	32040	10년 5월
	이복	110,970	10년 5월
	이상정	382,116	10년 5월
	이정희	151,140	10년 5월
	이영희	65070	10년 5월
	이유순	98670	10년 5월
	이재만	32460	10년 5월
	이재학	122,640	10년 5월
	이학로	145,950	10년 5월
	임근수	95970	10년 5월
	임병동	111,420	10년 5월
	정현숙	131,970	10년 5월
	정현호	112,620	10년 5월
	정병욱	122,880	10년 5월
	정수희	71310	10년 5월
	정연홍	88320	10년 5월
	정용택	209,180	10년 5월
	정종훈	84150	10년 5월
	조승희	110,160	10년 5월
	조현우	300,660	10년 5월
	전병진	136,320	10년 5월
	전순일	75840	10년 5월
	최근수	65400	10년 5월
	최길영	119,690	10년 5월
	최병용	68850	10년 5월
	최원술	179,490	10년 5월
	표복수	108,800	10년 5월
	한용현	127,920	10년 5월
	합인영	5,340	10년 5월
	홍중삼	112,920	10년 5월
	홍미숙	128,460	10년 5월
	홍승해	121,860	10년 5월
	황의원	268,950	10년 5월
	기순옥	27960	10년 6월
	강신영	128,560	10년 6월
	공희영	148,860	10년 6월
	공유미	115,320	10년 6월
	구본영	91500	10년 6월
	구재노1	125,820	10년 6월
	구재노2	95580	10년 6월
	권영관	212,730	10년 6월
	권오근	68640	10년 6월
	권희준	146,124	10년 6월
	권희준	325,700	10년 6월
	김일섭	120,240	10년 6월
	김건수	194,070	10년 6월
	김경근	135,260	10년 6월
	김광희	131,460	10년 6월

실적

도계장	대표	금액	일자
채경명	6720	10년 7월	
정병진	113,010	10년 7월	
최순임	6240	10년 7월	
최근수	85380	10년 7월	
최기수	8320	10년 7월	
최원숙	172,850	10년 7월	
최영자	100,440	10년 7월	
최원술	150,780	10년 7월	
표복숙	101,790	10년 7월	
하중성	146,715	10년 7월	
한용원	97920	10년 7월	
홍성혜	131,244	10년 7월	
황유동	178,800	10년 7월	
황의원	184,410	10년 7월	

도계장	대표	금액	일자
이은준2	86280	10년 4월	
황태용	89160	10년 4월	
박종중	123,060	10년 5월	
박중식	116,970	10년 5월	
방진우	176,130	10년 5월	
방중성	204,510	10년 5월	
배동원	91710	10년 5월	
유재현	139,620	10년 5월	
육광인	49740	10년 5월	
인진영	77610	10년 5월	
정정환	101,700	10년 5월	
한기황	204,350	10년 5월	
문기환	63780	10년 5월	
박재철	124,440	10년 5월	
유영근	74250	10년 5월	
이강진	113,940	10년 5월	
이창주	107,370	10년 5월	
경광정	176,100	10년 5월	
장기영	64950	10년 5월	
박경실	84030	10년 5월	
주진희	68670	10년 5월	
안병호	223,260	10년 5월	
이민회	73320	10년 5월	
이남수	72750	10년 5월	
윤준수	86760	10년 5월	
윤인래	117,510	10년 6월	
이지범	157,650	10년 6월	
조재용	60960	10년 6월	
김이자	90350	10년 6월	
이양진	83280	10년 6월	
박은택	105,990	10년 6월	
성종경	161,970	10년 6월	
이금선	79950	10년 6월	
임광재	88550	10년 6월	
장광수	136,350	10년 6월	
정규대	67500	10년 6월	
김정희	57750	10년 6월	
윤영모	72600	10년 6월	
서한근	97290	10년 6월	
황승용	95250	10년 6월	
안병희	191,910	10년 6월	
이민회	70770	10년 6월	
유영복	162,600	10년 6월	
윤준수	96870	10년 6월	
박중식	111,360	10년 7월	
방진우	167,490	10년 7월	
방중택	288,960	10년 7월	
배동원	83130	10년 7월	
유재현	119,670	10년 7월	
이지범	147,360	10년 7월	
황승용	95250	10년 7월	
김이자	89280	10년 7월	
박재배	140,730	10년 7월	
홍준수	113,310	10년 7월	
육광인	52350	10년 7월	
인진영	90450	10년 7월	
정정환	91650	10년 7월	
김수이	209,310	10년 7월	
유영근	76200	10년 7월	
이강진	126,000	10년 7월	
이승영	132,000	10년 7월	
이창주	107,320	10년 7월	
임준철	87930	10년 7월	
장광정	129,540	10년 7월	
장광수	116,850	10년 7월	
강진보	62640	10년 7월	
정광순	105,900	10년 7월	
황태용	80580	10년 7월	
김광수	117,090	10년 7월	
김경희	113,520	10년 7월	
이남수	72450	10년 7월	
박중식	112,440	10년 8월	
방진우	169,920	10년 8월	
배동원	82080	10년 8월	
신미선	121,380	10년 8월	
이진범	141,090	10년 8월	
조한용	49950	10년 8월	
박재배	140,130	10년 8월	
이준구	198,480	10년 8월	
정정환	85110	10년 8월	
박재철	104,490	10년 8월	
방은택	92550	10년 8월	
성종경	146,200	10년 8월	
김이자	34950	10년 8월	
김덕주	31970	10년 8월	
박길중	94170	10년 8월	

도계장	대표	금액	일자
이승영	138,540	10년 8월	
이승재	55920	10년 8월	
정규대	68460	10년 8월	
김진희	69060	10년 8월	
이강진	112,050	10년 8월	
정명순	123,870	10년 8월	
유영복	174,380	10년 8월	
유지호	53940	10년 8월	
이남수	53310	10년 8월	
홍순대	121,440	10년 8월	
김기용	73170	10년 8월	
방중성	251,940	10년 9월	
오상근	170,700	10년 9월	
유재현	119,190	10년 9월	
이남수	69780	10년 9월	
최정현	68700	10년 9월	
황승용	99180	10년 9월	
박중하	102,690	10년 9월	
유광인	55380	10년 9월	
이준구	229,860	10년 9월	
인진영	80910	10년 9월	
정정환	97980	10년 9월	
김시보	209,910	10년 9월	
김광란	111,660	10년 9월	
유영근	71970	10년 9월	
윤준수	67140	10년 9월	
이창주	85230	10년 9월	
이재용	82500	10년 9월	
임준철	87780	10년 9월	
강진보	73410	10년 9월	
박성철	92550	10년 9월	
이은준2	96870	10년 9월	
이승재	55590	10년 9월	
정세영	147,240	10년 9월	
황태용	87840	10년 9월	
김중수	113,160	10년 9월	
김정희	123,790	10년 9월	
이종철	141,690	10년 9월	
김광재	165,660	10년 9월	
어성현	215,700	10년 9월	
방진우	192,900	10년 10월	
배동원	100,770	10년 10월	
김기선	168,000	10년 10월	
조한용	50610	10년 10월	
구종모	129,720	10년 10월	
홍준수	125,880	10년 10월	
방중택	180,500	10년 10월	
성종경	152,790	10년 10월	
양두호	36990	10년 10월	
이재용	63540	10년 10월	
정규대	69150	10년 10월	
오복희	88020	10년 10월	
이강진	149,660	10년 10월	
윤인래	124,680	10년 10월	
정명순	126,380	10년 10월	
김정희	135,240	10년 10월	
김정희	123,400	10년 10월	
유영복	177,380	10년 10월	
이종철	121,950	10년 10월	
정성일	213,150	10년 10월	

도계장	대표	금액	일자
김병곤	8864	10년 2월	
정순호	20661	10년 2월	
조영진	24384	10년 3월	
신상준	94388	10년 3월	
양진환	18573	10년 3월	
이민호	25119	10년 3월	
이동수	30735	10년 3월	
유종길	7995	10년 3월	
김정희	114,693	10년 3월	
전영자	28347	10년 3월	
강휘부	44802	10년 3월	
박영귀	17966	10년 3월	
정음호	9,123	10년 3월	
유덕진	24950	10년 3월	
김혜정	45242	10년 3월	
김상호	10658	10년 3월	
신호경	79221	10년 4월	
전영자	17323	10년 4월	
황삼순	75498	10년 4월	
이아경	7,227	10년 4월	
오세원	41427	10년 4월	
송분심	51855	10년 4월	
고상봉	57788	10년 4월	
박재덕	54216	10년 4월	
신상준	74499	10년 4월	
이두리	71289	10년 4월	
조영진	19416	10년 4월	
손상호	45636	10년 4월	
윤석현	10524	10년 4월	
장미경	27575	10년 4월	
조영진	59238	10년 5월	
이두리	36659	10년 5월	
박봉석	26588	10년 5월	
김민국	91875	10년 5월	
이윤갑	85014	10년 5월	
전영자	46590	10년 5월	
배순이	15879	10년 5월	
신호경	118,466	10년 5월	
황삼순	30474	10년 5월	
윤용만	37173	10년 5월	
권유화	7,887	10년 5월	
강휘부	7,116	10년 5월	
박영귀	16815	10년 5월	
장미경	8,144	10년 5월	
노홍원	27185	10년 5월	
김병곤	64738	10년 5월	
정음호	18551	10년 5월	
황삼순	34290	10년 6월	
송분심	30324	10년 6월	
김중정	39216	10년 6월	
신상준	56532	10년 6월	
김순애	84651	10년 6월	
이두리	108,089	10년 6월	
고상봉	86271	10년 6월	
김민국	26079	10년 6월	
이윤갑	4,593	10년 6월	
김정희	37388	10년 6월	
박재덕	17673	10년 6월	
강휘부	56498	10년 6월	
이태근	16028	10년 6월	
윤중숙	31998	10년 6월	
열정진	42786	10년 6월	
정음호	16586	10년 6월	
윤석현	9,082	10년 6월	
김혜정	61511	10년 6월	
손상호	40344	10년 6월	
장미경	63228	10년 6월	
민영호	74138	10년 7월	
서인환	16524	10년 7월	
오실대	49448	10년 7월	
박상태	51908	10년 7월	
박신명	58338	10년 7월	
이윤갑	114,024	10년 7월	
오세원	53925	10년 7월	
김정희	64857	10년 7월	
황삼순	72225	10년 7월	
김순애	9,270	10년 7월	
김진조	25821	10년 7월	
윤용만	55068	10년 7월	
윤중숙	48771	10년 7월	
이명환	14064	10년 7월	
강휘부	39744	10년 7월	
박영귀	8,517	10년 7월	
노홍원	46895	10년 7월	
장미경	4,505	10년 7월	

도계장	대표	금액	일자
김병곤	13658	10년 7월	
김순희	42907	10년 8월	
정음호	26748	10년 8월	
김혜정	38717	10년 8월	
염정현	20664	10년 9월	
서인환	54873	10년 9월	
윤중숙	30921	10년 9월	
김재하	16269	10년 9월	
김순애	69978	10년 9월	
유효철	95292	10년 9월	
고상봉	68976	10년 9월	
송분심	35547	10년 9월	
서인환	54873	10년 9월	
박봉석	15648	10년 9월	
박재덕	43113	10년 9월	
김순애	88565	10년 9월	
손상호	22586	10년 9월	
윤석현	10929	10년 9월	
장미경	25572	10년 9월	
유덕진	14676	10년 9월	
조갑순	15039	10년 9월	
노홍원	41979	10년 9월	
김병곤	25319	10년 9월	
권유화	24945	10년 10월	
김진조	17607	10년 10월	
유동환	41337	10년 10월	
손상호	15477	10년 10월	
박영귀	14514	10년 10월	
이윤갑	41768	10년 10월	
이두리	83904	10년 10월	
전영자	36201	10년 10월	
김정희	99048	10년 10월	
신호경	73830	10년 10월	
신상준	44790	10년 10월	
오세원	85179	10년 10월	
정음호	32276	10년 10월	
유동환	9,987	10년 10월	
윤용만	48315	10년 11월	
윤중숙	3,216	10년 11월	
박상태	105,900	10년 11월	
김순애	19404	10년 11월	
유효철	54998	10년 11월	
조영진	35838	10년 11월	
고상봉	37299	10년 11월	

도계장	대표	금액	일자
신기동	65040	10년 6월	
김순희	79800	10년 6월	
강호원	91875	10년 6월	
이태근	117,705	10년 6월	
강양원	83250	10년 6월	
노성철	137,350	10년 6월	
이항숙	50940	10년 6월	
허동식	157,050	10년 6월	
박재규	81195	10년 6월	
한학희	90000	10년 6월	
박병철	98100	10년 6월	
서귀임	194,070	10년 6월	
박미석	188,945	10년 6월	
권규연	81675	10년 6월	
전병현	122,370	10년 6월	
김은리	154,080	10년 6월	
배영순	181,575	10년 6월	
오영순	86475	10년 6월	
김관범	108,090	10년 7월	
유문심	117,300	10년 7월	
김규범	129,420	10년 7월	
리승우	142,575	10년 7월	
윤영애	28950	10년 7월	
신선자	116,885	10년 7월	
여란희	80880	10년 7월	
윤기삼	144,600	10년 7월	
성문수	92755	10년 7월	
김중정	92550	10년 7월	
김용관	131,190	10년 7월	
박치희	101,560	10년 7월	
권동권	83978	10년 7월	
신기동	73830	10년 7월	
박현철	196,685	10년 7월	
백승인	112,770	10년 7월	
서성용	62240	10년 7월	
강호원	86910	10년 7월	
노성철	144,600	10년 7월	
김순현	82158	10년 7월	
윤광옥	66890	10년 7월	
이태근	115,485	10년 7월	
조광우	117,075	10년 8월	
정봉근	105,840	10년 8월	
한학희	84675	10년 8월	
신부희	76125	10년 8월	
박재규	59715	10년 8월	
이항숙	51000	10년 8월	
강양원	75941	10년 8월	
박병철	114,420	10년 8월	
서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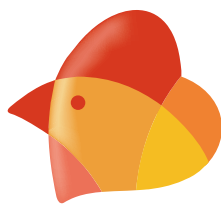
도계장	대표	금액	일자	도계장	대표	금액	일자	도계장	대표	금액	일자	도계장	대표	금액	일자	도계장	대표	금액	일자			
10.05.01	김정윤	108,300	10년 3월	10.05.01	박평기	119,370	10년 7월	10.05.01	김익점	90660	10년 5월	10.05.01	송관석	195,990	10년 5월	10.05.01	김춘차	149,130	10년 9월			
	윤태웅	202,050	10년 3월		김근주	227,520	10년 7월		이상철	117,030	10년 3월		한운래	118,350	10년 5월		김이순	209,280	10년 5월			
	장숙희	150,570	10년 3월		박두순	147,780	10년 7월		공경태	141,030	10년 4월		신현철	300,000	10년 5월		최경국	117,840	10년 6월	남윤천	238,900	10년 7월
	김금숙	248,070	10년 3월		유현만	102,000	10년 7월		구본선	120,600	10년 4월		윤대일	111,900	10년 5월		안인철	177,810	10년 6월	김대근	300,000	10년 7월
	박종선	202,410	10년 3월		나국주	106,280	10년 7월		김대복	93420	10년 4월		최원호	261,000	10년 5월		이정애	54600	10년 6월	임금택	130,560	10년 7월
	박상현	120,000	10년 3월		양재일	246,650	10년 7월		김영호	89640	10년 4월		황재남	124,380	10년 5월		고인숙	66930	10년 6월	이순준	90900	10년 7월
	박동철	119,380	10년 3월		김이순	189,150	10년 7월		김상진	151,140	10년 4월		강공식	174,000	10년 6월		조환옥	153,870	10년 6월	정운광	110,000	10년 7월
	마봉춘	257,640	10년 3월		장아석	64050	10년 7월		김윤성	138,390	10년 4월		차영하	100,350	10년 6월		-	-	-	박원근	79500	10년 7월
	나국주	114,570	10년 3월		마기영	93060	10년 7월		김중래	198,710	10년 4월		최원길	315,000	10년 6월		김홍식	151,200	10년 6월	이충성	75900	10년 7월
	김정애	91580	10년 4월		박동철	108,750	10년 7월		김한영	257,070	10년 4월		정대근	159,000	10년 6월		홍관표	142,500	10년 6월	김동철	20900	10년 7월
	장상훈	121,740	10년 4월		장상훈	224,400	10년 7월		동세진	36300	10년 4월		김중수	67650	10년 6월		이정환	143,880	10년 6월	김동철	150,000	10년 7월
	김학춘	102,120	10년 4월		마봉춘	198,180	10년 7월		문정필	268,400	10년 4월		정수모	108,750	10년 6월		-	-	-	변준석	100,000	10년 7월
	장숙희	139,170	10년 4월		서점주	162,600	10년 7월		박규덕	168,780	10년 4월		김익용	54840	10년 6월		서영구	669,300	10년 1월	이영하	162,000	10년 7월
	서점수	90420	10년 4월		김정애	87900	10년 7월		박왕준	151,110	10년 4월		김래래	123,510	10년 6월		남윤천	298,750	10년 1월	추석기	120,000	10년 7월
	김정윤	122,600	10년 4월		김학춘	92160	10년 7월		박헌경	146,480	10년 4월		조철구	6,150	10년 7월		주석기	648,540	10년 1월	정선자	60900	10년 7월
	한용문	126,347	10년 4월		신영호	123,680	10년 7월		신영호	145,740	10년 4월		박재원	91650	10년 7월		정영삼	521,550	10년 1월	민중식	300,000	10년 7월
	이준배	37125	10년 4월		설동진	166,660	10년 7월		이강식	81900	10년 4월	홍신기	5,610	10년 7월	김형진		150,000	10년 1월	최봉연	182,240	10년 8월	
	한용문	121,393	10년 5월		장홍식	195,845	10년 7월		이문자	301,710	10년 4월	김희경	97650	10년 7월	이영재		151,740	10년 1월	진길철	94,520	10년 8월	
	장금일	167,730	10년 5월		-	-	-		-	-	이중식	91680	10년 4월	최원호	65,900		10년 2월	김홍술	120,000	10년 9월		
	이준배	86625	10년 5월		공경태	135,540	10년 2월		장덕기	83610	10년 4월	박장우	1,710	10년 7월	이정환		108,000	10년 2월	이정환	150,000	10년 9월	
	설동진	224,250	10년 5월		구본선	117,360	10년 2월	정재원	32850	10년 4월	김영채	101,505	10년 7월	김병화	189,000		10년 2월	김정환	175,000	10년 9월		
	장금일	218,520	10년 5월		김대복	98,100	10년 2월	채신희	127,830	10년 4월	강공식	91820	10년 7월	이준준	150,000		10년 2월	박현서	120,000	10년 9월		
	박종선	191,880	10년 5월		김동호	82740	10년 2월	최희자	178,280	10년 2월	차영하	104,220	10년 7월	최경길	180,000		10년 2월	남윤천	214,600	10년 9월		
	나국주	138,260	10년 5월		김영호	151,260	10년 2월	황인무	151,580	10년 4월	심봉매	157,706	10년 7월	남상길	166,000		10년 3월	김종국	300,000	10년 9월		
	김금숙	242,080	10년 5월	김상진	145,890	10년 2월	신금호	352,440	10년 4월	정대근	131,250	10년 7월	최영규	120,150	10년 3월	임금택	121,800	10년 9월				
	마봉춘	268,350	10년 5월	김윤성	138,210	10년 2월	오봉태	168,880	10년 4월	김중수	149,570	10년 7월	남윤천	222,800	10년 3월	이준주	300,000	10년 9월				
	마기영	100,800	10년 5월	김인오	97920	10년 2월	지구환	222,900	10년 4월	정수모	243,000	10년 7월	이창민	75000	10년 3월	지구환	135,000	10년 9월				
	박상현	133350	10년 5월	김중래	198,280	10년 2월	곽영대	104,650	10년 5월	김중수	78900	10년 7월	이준준	90900	10년 3월	이경희	175,000	10년 9월				
	박동철	111,570	10년 5월	김한영	267,990	10년 2월	김순태	151,740	10년 5월	김동수	78900	10년 7월	박원근	84000	10년 3월	남상길	150,000	10년 9월				
	장상훈	188,580	10년 6월	박규덕	176,910	10년 2월	김용현	151,125	10년 5월	이원규	112,800	10년 2월	이준주	150,000	10년 4월	김종철	45900	10년 9월				
	서점주	160,800	10년 6월	박왕준	68340	10년 2월	김인오	144,000	10년 5월	채신희	19200	10년 2월	장정재	100,000	10년 4월	박원근	69900	10년 9월				
	김학춘	101,670	10년 6월	박헌경	142,110	10년 2월	김주민	108,270	10년 5월	경진채	62700	10년 3월	이영하	166,000	10년 4월	전중찬	90900	10년 9월				
	김정애	84080	10년 6월	반문희	170,775	10년 2월	박종현	91320	10년 5월	이장재	88530	10년 3월	이장재	343,380	10년 5월	문헌순	120,000	10년 9월				
	장홍식	228,650	10년 6월	신선호	151,380	10년 2월	오봉태	210,485	10년 5월	이원규	108,300	10년 6월	원인희	120,000	10년 4월	황의철	67900	10년 9월				
김중번	72830	10년 6월	안준규	50565	10년 2월	오인표	72900	10년 5월	공정애	40200	10년 9월	김병환	140,000	10년 4월	황의철	64900	10년 9월					
오윤선	187,020	10년 6월	오인희	60390	10년 2월	이갑표	127,600	10년 5월	김영호	41400	10년 9월	홍계일	110,000	10년 4월	이영하	81900	10년 9월					
이동관	126,810	10년 6월	이강식	88290	10년 2월	이계표	168,480	10년 5월	박종일	19950	10년 9월	이준수	150,000	10년 4월	최봉연	171,300	10년 9월					
곽상오	151,680	10년 6월	이문자	246,150	10년 2월	이동섭	48730	10년 5월	이민식	149,400	10년 10월	김이순	197,940	10년 5월	양영생	100,000	10년 10월					
이민선	164,080	10년 6월	장덕기	91800	10년 2월	이문자	158,120	10년 5월	박용규	85350	10년 10월	변준석	150,000	10년 5월	이달준	116,000	10년 10월					
설동진	188,490	10년 6월	채신희	120,980	10년 2월	이상철	114,000	10년 5월	이원규	126,150	10년 10월	임금택	126,000	10년 5월	남윤천	216,000	10년 10월					
한용문	279,570	10년 6월	최희자	174,510	10년 2월	이중승2	119,400	10년 5월	하병훈	527,700	10년 6월	윤정화	87900	10년 5월	변준석	150,000	10년 10월					
장금일	158,910	10년 6월	곽영대	102,420	10년 3월	정재원	53100	10년 5월	이호재	3,486,800	10년 6월	남상길	150,000	10년 5월	박원서	114,000	10년 10월					
김정윤	117,680	10년 6월	김순태	168,460	10년 3월	경진채	20400	10년 5월	오계국	1,159,300	10년 6월	최영규	117,300	10년 5월	조귀봉	187,200	10년 11월					
박상현	92700	10년 6월	김인오	47940	10년 3월	저충근	77400	10년 5월	하병훈	247,300	10년 6월	김국록	66000	10년 5월	김경태	198,000	10년 11월					
상충백	70980	10년 6월	김주민	104,570	10년 3월	-	-	-	하병훈	247,300	10년 6월	김국록	45000	10년 5월	정춘화	10900	10년 11월					
장금일	204,390	10년 6월	마상환	126,840	10년 3월	유태섭	120,250	10년 1월	오세울	1,389,500	10년 6월	정선자	60900	10년 5월	최봉연	169,260	10년 11월					
여창선	196,170	10년 6월	박중일	83130	10년 3월	이경학	100,600	10년 1월	이동현	731,700	10년 6월	황의철	67950	10년 6월	이영하	174,000	10년 11월					
박종선	194,490	10년 6월	오인희	31770	10년 3월	김영채	171,500	10년 1월	차진우	1,054,000	10년 6월	남윤천	235,000	10년 6월	추석기	146,400	10년 11월					
조건택	26941	10년 6월	이갑표	134,400	10년 3월	김익점	68400	10년 1월	송연호	3,806,200	10년 6월	박원근	81900	10년 6월	이화천	120,000	10년 11월					
이준배	78908	10년 6월	이계표	178,944	10년 3월	안영기	37770	10년 2월	안영기	224,800	10년 6월	이영하	153,000	10년 6월	박창윤	180,000	10년 11월					
조건택	95519	10년 7월	이동섭	106,090	10년 3월	강공식	121,280	10년 3월	송연호	2,899,800	10년 6월	주석기	147,000	10년 6월	문헌순	110,000	10년 11월					
장숙희	249,060	10년 7월	이중승2	42900	10년 3월	김익점	158,480	10년 3월	안영기	1,082,600	10년 6월	최영규	129,810	10년 6월	박동철	119,250	10년 11월					
이준배	46342	10년 7월	이중희	147,390	10년 3월	이경학	43920	10년 4월	송연호	1,322,200	10년 6월	-	-	-	변준석	150,000	10년 11월					
박상현	110,540	10년 7월	정진채	173,280	10년 3월	김영채	22930	10년 5월	한병권	181,800	10년 6월	한병권	181,800	10년 6월	김양수	112,500	10년 11월					
민갑식	88200	10년 7월	저충근	88860	10년 3월	박재원	120,180	10년 5월	한병권	108,000	10년 6월	-	-	-	-	-						

• 육계자조금 송금계좌 : 농협 301-0017-6070-01, • 예금주 :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 문의 : 02-585-9974

자조금 납부는 육계산업의 발전에 쓰여집니다.

자조금납부에 참여해주신 농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육계의무자조금은 2009년 6월 1일부터 ‘축산자조금의조성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육계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라면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육계자조금은 육계산업 발전을 위해 쓰여져 농가들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육계자조금 납부 현황은 소식지와 육계자조금 홈페이지(www.ichicken.or.kr) 자조금 납부현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계자조금

비매품 / 제2권 제12호 통권14호 / 등록번호 서초 라00269 / 발행 2010년 12월 15일 / 발행인겸 편집인 이준동 / 발행처 (사)대한양계협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축산회관 5층, Tel : (02)588-7651, Fax : (02)588-7655 / 인쇄처 삼원정판사 / 편집 인포아트 /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Tel : (02)585-9974 Fax : (02)585-3548



국산 닭고기 인증제 실시

「국산 닭고기 인증제」는 닭고기 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안정적인 소비 촉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인 대한양계협회가 국산 닭고기를 취급하는 닭고기 외식업체 및 전문음식점에 대하여 원산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국산 닭고기 인증제」는 육계자조금 사업으로 (사)대한양계협회가 사업을 운영하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농식품부·소비자시민모임·축산물품질평가원 등으로 인증위원회를 구성해 인증의 가치와 공정성이 높습니다.

